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광식 의원)

의 안 번 호	제2666호

발의년월일 : 2021년 9월 30일
발 의 자 : 심광식, 박종호 의원
찬 성 자 : 정택진, 임준희, 윤인숙, 나상희 의원 (4명)

1.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함.

나.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안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에 “장기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정비함.(안 제1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 타

1) 조 례 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 2021. 10. 1. ~ 2021. 10.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기등” 이란”을 ““장기등”이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장기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계획)”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기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장기등”을 각각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등의 운영체계

제5조의 제목 “(장기등 기증등록 신청 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의”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의”로, “법 제13조”를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으로 하며,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장기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장기등 기증문화”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로, “장

기등 기증자”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장기등 기증희망자”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장기등 기증등록”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으로, “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를 “홍보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대사”로, “장기등 기증 장려와 관련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장기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장기등 기증・이식의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장기등” 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등”이란 ----------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삭 제>
나. 골수・안구	<삭 제>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췌도(膵島)및 소장을 말한다.	<삭 제>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
제4조(장기등 기증등록 장려계획)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등록 장려에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계획) ① ---------- 장기등 및 인체조직 -------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등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
4. 장기등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
5.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장기등 및 인체조직 ----------
제5조(장기등 기증등록 신청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의 접수 및 해당 신청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신청 등) ①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의 -------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장기등 및 인체조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하고	③ 장기등 및 인체조직 ----------

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주민건강검진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의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제7조(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홍보를 위해 유명인, 저명인사 등을 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 위촉) ①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 홍보대사----------.
② 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기증 장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대사---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	제9조(비밀의 유지) ---------- 장기등 및 인체조직 ----------

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27., 2008. 2. 29., 2010. 1. 18., 2014. 1. 28., 2016. 2. 4., 2018. 12. 11.〉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의2.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①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기관
3.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기증자 접수·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 통보
2.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의 통보
3.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
4. 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
3.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⑤ 그 밖에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